

「시립양덕어린이집」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6월 8일 /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6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6. 6. 18.)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원한 여성가족과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시립양덕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로 기존 운영체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 심사』, 『운영성과평가』 실시 후 운영실적, 공신력, 전문성 등을 고려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로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심의 결정으로,

○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제안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전문성, 운영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한 재위탁 결정에 대한 심의로,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제안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2조~제9조, 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위탁운영) 및 제23조(위탁계약)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교육부)

3. 위탁시설 현황

어린이집명	위 치	원장	정원	현재위탁기간	비고
시립양덕어린이집	북구장량중영로100번길 1 (장량LH6단지 관리동)	안미나	49명	2021.07.01.~2026.6.30	

4. 재위탁 계획

- 위탁기간 : 5년
- 위탁구분 : 재위탁
-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사무	내 용	비 고
어린이집 운영전반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장애,야간,영아,다문화) - 입소한 영·유아의 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 - 연간 보육계획서 수립 시행 - 어린이집 종사자, 이용아동,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복무, 후생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위탁신청 서류에 근거한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등 평가
- 2차 PPT 소견발표 : 전문성 및 운영능력 평가(보육정책위원회 의결)

○ 심사내용 : 운영 및 사업실적, 운영체(원장)의 전문성,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

○ 선정방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2026년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공통 심사 기준표』 준용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합산 제외

·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모집) 추진

○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항목별점수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0
3. 운영체의 운영실적	30
4. 운영체의 공신력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5.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 심의

○ 심의완료 : 총무새마을과 - 20596(26.5.27) 『적합』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보육교직원 채용, 보육 프로그램 구성, 학부모 관리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 업무를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를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평가받도록 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위탁운영)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 되므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기존 확보된 인력 및 보육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위탁운영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 측정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법령·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거 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공교육 증대 국가정책과 저출산으로 인한 민간서비스 공급위축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도 민간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함

6. 어린이집 운영 성과평가 추진 및 결과

- 평가기관 : 지방행정발전연구원(전문평가기관)
- 평가기간 : 2026. 1. ~ 3.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현장평가, 운영성과지표 평가 등
- 평가결과 : 우수 93.69점/100점
- 평가요약 : 성과평가 결과 총점 93.69점 받았으며, 지도점검 결과 2건의 지적사항(CCTV 관리, 정보공시 관리)이 있었으나 모두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운영 전반이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고시공고 : 포항시 공고 제2026-729호

7.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 결과

[2026년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13:30
- 심의방법 : 대면심의(위원 15명 중 11명 참석)
- 심의항목
 - 수탁자의 재정능력 및 보육시설 운영 실적
 - 원장의 전문성 및 수탁자 도덕성·공신력
 - 향후 5년간 어린이집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심의기준 : 심의위원 평균 점수 80점 이상 시 재위탁 적격
- 심의결과 : 92.8점/위탁연장(5년)
- 종합평가
 - 교직원 복지 증진과 안전 중심 운영, 지역사회 연계가 우수하며, 위험성평가 제도 및 교직원 역량강화 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보완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우수함.

8. 향후 추진 계획

- 2026. 6월 재위탁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9.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요지(전문위원 : 김경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시립양덕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시립양덕어린이집’은 LH장량천년나무6단지아파트에 위치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으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기존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른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서도 재위탁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어, 재위탁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데 대하여는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0.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11. 토론의 요지 : 없 음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